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2.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2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1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101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2004. 2. 4)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민원봉사과장 김 시 진

가.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지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2002. 12.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규정에는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한 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10조제5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02. 12. 2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제2차정례회가 폐회된 후인 2003년 12월 24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개정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출당시 부칙에 2004.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시행일은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비표 내용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남열 위원) : 조례 개정이 늦은 이유는?
- 답변요지(김시진 민원봉사과장) :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4. 2. 4 전완수 위원

나.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이 2003. 12.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 1. 1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이 문제는 없으나, 동 건이 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2.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됨으로 2004.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규정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중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4. 2. 4.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24일 의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문제가 없었으나, 동 건이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중 “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중 “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 표

원안	수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1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의 마멸 등으로 공인을 갱신한 경우 당해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에 폐기하는 공인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관하되,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근거법령

가. 사무관리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제39조 및 41조

나.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03.07.14 행정자치부령 제203호) 제57조 및 제58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3.11.11 ~ 11.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3. 12. 01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본문 중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생 략)</p> <p>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민원봉사과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p> <p>③(생 략)</p>	<p>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④(생 략)</p> <p>(신 설)</p>	<p>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④(현행과 같음)</p> <p>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고) 구청장은 공인(전자 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단서 신설)</p> <p>1.~4.(생 략)</p>	<p>제11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1.~4.(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